

현대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

(법인사업자용)

현대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

가맹점모집대리점용

현대카드 주식회사(이하 “갑”이라 함)와 _____ 이하 “을”이라 함)는
“갑”의 신용카드가맹점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함)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 목적)

본 계약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“갑”의 가맹점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.

제2조(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)

“갑”과 “을”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,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정한 바를 준수하고, “을”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)
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, “을”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합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가맹점 모집업무

- “갑”의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‘가맹점 모집 대상업소’(이하 ‘가맹 대상업소’) 사업주에게 “갑”이 정한 ‘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’를 징구하여 “갑”에게 전달하는 업무
- ‘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’의 기재 사실 진위 및 본인신청 여부와 영업 여부 사실 확인

제4조(가맹점 모집)

- “을”은 관제법령 및 “갑”이 정한 기준에 따라 “갑”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.
- “을”은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및 ‘가맹점 모집’ 대상업소임을 확인하고, 이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당사의 가맹점 신청서류를 업주에게 징구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한다.
- “을”은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(신청서 상에 기재)에 대한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와 본인신청 및 영업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“을”은 모집한 가맹점 신청서를 “갑”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.

제5조(자격기준 및 심사)

-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류를 기초로 “갑”의 가맹점 자격기준에 따라 가맹점적격 여부를 심사한다.
- “갑”은 위 가맹점 적격 여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신청을 승인한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내규에 따라 가맹점 승인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탈락한 경우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“갑”은 가맹점 가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“을”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모집수수료 지급)

- “갑”은 “갑”이 정한 ‘모집수수료 지급 기준’에 따라 “을”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. 단, 위탁계약 기간 중 “갑”이 정하는 수수료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모집수수료 산출 작업 및 지급은 모집일 포함 4개월간 매출 발생된 가동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하며, 건당 1,000원 지급한다.
- 모집수수료는 매월 15일 지급되며,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.
- 모집수수료 지급 시 가맹점월등상대가 정상인 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복수가맹점의 경우 해지일이 1년이 경과된 가맹점의 복수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때 법인사업자인 “을”에게 부가세가 명시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, “을”은 수수료 지급받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지급 처리한다.
- 모집수수료 지급시점에 “을”이 “갑”의 채권을 연체한 경우 모집수수료의 지급유예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7조(준수사항)

-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자필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가입신청서 접수 시 “갑”의 가맹점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가입 신청자들에게 자세히 명시 설명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가입 신청서류의 위·변조 여부 및 기재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“갑”이 승인한 가맹점에게 “갑”의 가맹점스티커 등 가맹점 영업 관련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.
 - “을”은 제3자로 하여금 “을”에 갈음하여 본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“갑”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본 계약의 종료와 상관없이 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,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“갑”의 책임과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(제공해줬다는 약속을 포함한다)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기타 “을”은 관제법령 및 “갑”이 정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모집대리점 패널리제도)

- “갑”이 정한 기준에 의해 불량가맹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모집대리점에 대한 패널리제도를 운영한다.
 -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1~2회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.
 -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3회 이상 시 대리점 해지할 수 있다.
 - 계약 해지된 모집대리점은 1년간 가맹점 모집 재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. (불량가맹점 : 현금응통, 전표유동, 부정매출발생, 위·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발생, 자기매출발생, 매출전표 위·변조 및 이중작성 등)

제9조(계약의 해지)

-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.

- “을”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“을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“을”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“갑”이 판단하는 경우
- “을” 본인의 사망 또는 해산, 파산선고, 위임업무 수행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,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
- “을”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·변조한 경우
- “을”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“갑”의 판단 기준으로 불량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
-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“을”이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(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)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위반사항의 시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“갑”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그 시정을 통보하고,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경우 본 계약의 효력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활동사항보고)

- “갑”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“을”의 위임업무에 관한 활동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모집경로 확인 등)

- “갑”은 “을”의 가맹점모집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(이하 “불법취득신용정보”라 한다)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
 -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
 -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는지 여부
 - 각 모집업무 종료 후 당해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지체없이 파괴하였는지 여부
 - 개인신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는지 여부

제12조 (법규준수 및 일부 무효)

-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규·정부지침·감독규정·고시·법원의 명령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) 및 환경, 보건, 안전, 노동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자신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기타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변경된 경우,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제정·변경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정·변경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나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. 단,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3조(손해배상)

- “을”이 본 계약 또는 “갑”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“갑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“갑”은 제①항의 손해액을 “을”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.

제14조 (청벌의무)

-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(상대방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종개인을 포함한다. 이하 본 조에서 같다)의 임직원이나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및 공기업의 직원 등에게 금품,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과도한 식사/절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도박, 금전대차, 공동투자, 인사청탁, 고용보장 등 부적절한 행위(“비위행위”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, 위반 당사자는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,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-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는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, 의무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.
-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.
 - “갑” 또는 “갑”의 임직원을 상대로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“비위행위”가 발견되거나 “비위행위”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,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“갑” 또는 “갑”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,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“갑”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.
 -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을 상대로 “갑” 또는 “갑”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“비위행위”가 발견되거나 “비위행위”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,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- “갑”은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,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“을”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.
- “을”은 이 계약서 외에 “갑”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윤리실천협약서를 숙지한 후 서약한다.

제15조 (비밀유지)

- “을”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보유할 권리가 없으며, 모집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괴하여야 한다.
- “을”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및 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’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“을”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계약 기간)

본 계약 기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,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(갑) 현대카드

인/서명

(을)

주소

상호

대표자

인/서명

년

월

일

현대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위임계약서

현대카드용

현대카드 주식회사(이하 “갑”이라 함)와 _____이하 “을”이라 함)는
“갑”의 신용카드가맹점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함)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 목적)

본 계약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“갑”의 가맹점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.

제2조(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)

“갑”과 “을”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,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정한 바를 준수하고, “을”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)
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, “을”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합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- 가맹점 모집업무
- “갑”의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‘가맹점 모집 대상업소’(이하 ‘가맹 대상업소’) 사업주에게 “갑”이 정한 ‘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’를 징구하여 “갑”에게 전달하는 업무
- ‘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’의 기재 사실 진위 및 본인신청 여부와 영업 여부 사실 확인

제4조(가맹점 모집)

- “을”은 관제법령 및 “갑”이 정한 기준에 따라 “갑”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.
- “을”은 가맹점 모집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및 ‘가맹점 모집’ 대상업소임을 확인하고, 이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당사의 가맹점 신청서류를 업주에게 징구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한다.
- “을”은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(신청서 상에 기재)에 대한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와 본인신청 및 영업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“을”은 모집한 가맹점 신청서를 “갑”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.

제5조(자격기준 및 심사)

-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류를 기초로 “갑”의 가맹점 자격기준에 따라 가맹점적격 여부를 심사한다.
- “갑”은 위 가맹점 적격 여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가입신청을 승인한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출한 가맹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내규에 따라 가맹점 승인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에 탈락한 경우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“갑”은 가맹점 가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“을”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모집수수료 지급)

- “갑”은 “갑”이 정한 ‘모집수수료 지급 기준’에 따라 “을”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. 단, 위탁계약 기간 중 “갑”이 정하는 수수료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모집수수료 산출 작업 및 지급은 모집일 포함 4개월간 매출 발생된 가동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하며, 건당 1,000원 지급한다.
- 모집수수료는 매월 15일 지급되며,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.
- 모집수수료 지급 시 가맹점월동상대가 정상인 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복수가맹점의 경우 해지일이 1년이 경과된 가맹점의 복수가맹점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때 법인사업자인 “을”에게 부가세가 명시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, “을”은 수수료 지급받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지급 처리한다.
- 모집수수료 지급시점에 “을”이 “갑”의 채권을 연체한 경우 모집수수료의 지급유예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7조(준수사항)

-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
- “갑”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
 - “을”은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자의 본인 여부 및 방문을 통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
 - “을”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자필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가입신청서 접수 시 “갑”의 가맹점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가입 신청자들에게 자세히 명시·설명 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가입 신청서류의 위·변조 여부 및 기재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“갑”이 승인한 가맹점에게 “갑”의 가맹점스타터 등 가맹점 영업 관련 준비물을 성실히 교부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본 계약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.
 - “을”은 제3자로 하여금 “을”에 갈음하여 본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“갑”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본 계약의 종료와 상관없이 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,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 - “을”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
 - “을”은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“갑”의 책임과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(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)하여서는 아니된다
 - 기타 “을”은 관제법령 및 “갑”이 정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

제8조(모집대리점 패널리제도)

- “갑”이 정한 기준에 의해 불량가맹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모집대리점에 대한 패널리제도를 운영한다.
 -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1~2회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
 - 최근 1년간 불량가맹점 모집 적발횟수 3회 이상 시 대리점 해지할 수 있다.
 - 계약해지된 모집대리점은 1년간 가맹점 모집 재계약을 금지할 수 있다. (불량가맹점 : 현금응통, 전표유동, 부정매출발생, 위·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발생, 자기매출발생, 매출전표 위·변조 및 이중작성 등)

제9조(계약의 해지)

-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.

- “을”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“을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“갑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“을”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“갑”이 판단하는 경우
- “을” 본인의 사망 또는 해산, 파산선고, 위임업무 수행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,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
- “을”이 가맹점 가입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·변조한 경우
- “을”이 모집한 가맹점들 중 “갑”의 판단 기준으로 불량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
- 기타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“을”이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
-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(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)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위반사항의 시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“갑”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그 시정을 통보하고,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경우 본 계약의 효력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활동사항보고)

- “갑”은 본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“을”의 위임업무에 관한 활동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모집경로 확인 등)

- “갑”은 “을”의 가맹점모집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(이하 “불법취득신용정보”라 한다)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
 -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
 -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는지 여부
 - 각 모집업무 종료 후 당해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지체없이 파괴하였는지 여부
 - 개인신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였는지 여부

제12조 (법규준수 및 일부 무효)

-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규·정부지침·감독규정·고시·법원의 명령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) 및 환경, 보건, 안전, 노동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자신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기타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변경된 경우,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제정·변경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정·변경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,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나 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. 단,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3조(손해배상)

- “을”이 본 계약 또는 “갑”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“갑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“갑”은 제①항의 손해액을 “을”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.

제14조 (청벌의무)

-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(상대방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을 대리하는 종개인을 포함한다. 이하 본 조에서 같다)의 임직원이나 이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및 공기업의 직원 등에게 금품,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과도한 식사/절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도박, 금전대차, 공동투자, 인사청탁, 고용보장 등 부적절한 행위(“비위행위”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, 위반 당사자는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,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-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, 의무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.
-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.
 - “갑” 또는 “갑”의 임직원을 상대로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‘비위행위’가 발견되거나 ‘비위행위’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,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“갑” 또는 “갑”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,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“갑”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.
 -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을 상대로 “갑” 또는 “갑”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‘비위행위’가 발견되거나 ‘비위행위’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,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- “갑”은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,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“을”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하도록 한다.
 - “을”은 이 계약서 외에 “갑”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협조하는 뜻으로 별첨된 윤리실천협약서를 숙지한 후 서약한다.

제15조 (비밀유지)

- “을”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보유할 권리가 없으며, 모집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괴하여야 한다.
- “을”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가맹점업주의 모든 정보를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및 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’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“을”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계약 기간)

본 계약 기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,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씩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(갑) 현대카드

인/서명

(을)

주소

상호

대표자

인/서명

년 월 일

